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김동아의원 ·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79
----------	-------

발의연월일 : 2025. 8. 28.

발 의 자 : 김동아 · 최혁진 · 박정현
서왕진 · 민형배 · 이수진
김준형 · 김영배 · 황운하
복기왕 · 정혜경 · 김종민
한정애 · 정춘생 의원
(14인)

제안이유

최근 한국 사회는 양극화, 지역 격차, 고령화, 청년 실업,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존 시장 중심 성장 패러다임만으로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주체들은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충에 기여하며 새로운 대안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시민사회와 지역 기반의 협력을 통해 ‘돌봄 · 연대 · 공존’에 기반한 생활 영역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기본사회’의 구성 원리와도 맞닿아 있음.

기본사회란 가족, 마을, 협동조합, 공공서비스, 복지 등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지탱하는 돌봄·관계·공동체의 기반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를 뜻하며, 사회연대경제는 바로 이러한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기반이자 실천의 장이라 할 수 있음.

국제적으로도 UN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2023)’을 채택하고, 2025년을 두 번째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등 국가의 대안적 경제 시스템으로 사회연대경제가 인정받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해 법적,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동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개별법에 의존해온 탓에 통합적인 지원체계 부재, 부처별 정책 전달과 관리의 비일관성, 칸막이 행정, 중간지원조직의 분절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범주, 참여 주체의 권리·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협력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 부처를 일원화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를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정책 영역으로 육성하고자 함.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국제연대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체계 내에서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협

력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지구적 연대와 지역 기반 대안경제의 선순환을 동시에 실현하는 법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본 법률은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이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의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연대경제의 기본원칙으로 ①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우선 ②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③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 ④ 이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우선 활용 ⑤ 상호부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 발전과 지역순환경제의 형성에 기여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사회연대경제”를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라.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

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정의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사회연대경제기업,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연대경제 협력조직 및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조직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2호 및 제3호).

마. “사회연대금융”을 사회문제의 개선과 사회적 가치 증진 및 참여자의 경제적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융자·보증·출연 등 금융활동과 이에 준하는 지원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6호).

바. 정부가 국가와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각각 매년 사회연대경제발전 시행계획과 사회연대경제발전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추진성과를 사회연대경제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사회연대경제위원회가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아. 사회연대경제 발전과 관련한 국가정책과 기본계획, 그리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민관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추진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4조).

자. 시·도지사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발전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연대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

차.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연대경제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2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회연대금융 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연대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타. 국가가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회연대금융 정책에 따라 지정된 사회연대금융기관이 기금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7조).

하.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지속가능발전·기후위기 대응 등 국제사회의 공동가치

실현을 위한 연대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7조 및 제3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이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의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여야 한다.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를 갖추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④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이익은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상호부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발전과 지역순환경제의 형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연대경제”란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연대경제기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

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소셜벤처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

3.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사회연대경제기업

나. 제4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다. 제5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협력조직

라.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조직

4.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량 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연대경제 협력조직”이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활동 교류 및 사업 협력을 위하여 지역·업종·부문·분야 등에 근거하여 결성된 협의체·연합체 등 연대조직을 말한다.

6. “사회연대금융”이란 사회문제의 개선과 사회적 가치 증진 및 참여자의 경제적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융자·보증·출연 등 금융활동과 이에 준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기반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과 협동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운영을 보충성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계획·시행·평가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연대경제조직의 책무) 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제2조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상호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공공구매 확대, 공유자산 형성 등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연대경제의 개발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연대경제의 개발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육성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① 정부는 국가와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

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연대경제 정책 현황과 전망
2. 사회연대경제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체계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와 협력 방안
5. 인재육성,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
6.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7. 지원정책의 통합·조정 및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8.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보·통계의 수집·관리
9.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10.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발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와 제14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사회연대경제발전 시행계획(이하 “부문

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당해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14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도 시행계획 수립)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사회연대경제발전 시·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당해 연도의 시·도 시행계획을 제14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위원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시·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이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① 제14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발전사업 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4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위원회는 부문별 및 시·도별 실적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이나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기준·절차·방법,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역발전 시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지역의 공동체 기반 확충과 사회연대경제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연대경제 기반확충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회의 등 민·관 협력 공동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2.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및 자원연계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충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4. 시·도별 사회연대경제 지원체계 설립과 시·군·구 연계 지원체계 구축 방안

5. 사회연대경제 공유자산과 공유거점 형성에 관한 사항

6. 지역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산업을 해당 경제협력권 산업에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협력 촉진과 민·관 협력 공동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를 연계·지원하거나 투자하는 기업·대학·재단·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정부와 시·도지사는 각각 전년도 사회연대경제 발전 주요 시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및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계획에 우선한다.

②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 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은 이 법에

다른 기본계획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산업활동 기여도를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일자리 비중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공정거래 등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되는 정부의 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3장 사회연대경제위원회 및 추진체계

제14조(사회연대경제위원회) ① 사회연대경제 발전과 관련한 국가정책과 기본계획, 그리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민관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추진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전망
2. 기본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제도의 조사,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령·제도의 제정·개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사회연대경제 재원조달, 사회연대금융 및 발전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6. 민관 협력 및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연대 촉진에 관한 사항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사무처)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며, 정부 측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민간 측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한 자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환경

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대표자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부문·분야·전국 단위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④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협의결과
등 주요 활동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1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연대

경제 발전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국방·국가안전보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지역 사회연대경제위원회) ① 시·도지사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발전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연대경제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연대경제 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8조(협의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회연대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의 연계·통합 및 예산 조정을 위하여 협의·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사회연대경제 통계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하여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연대경제 관련 통계가 국민통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사회연대경제 연대조직의 설립) 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사업협력 및 활동 교류 등을 위하여 지역·업종·분야 또는 전국 단위의 협의체나 연합체 등 사회연대경제 연대조직(이하 “연대조직”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연대조직은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 ③ 연대조직은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정책을 제안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대조직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한국사회연대경제원의 설립 등) ①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연대경제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이하 “경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경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경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연대경제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및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2.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3.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 사업모델 개발
4.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
5. 사회연대경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계관리
6. 사회적 가치 평가 및 측정지표 개발
7. 사회연대경제 교육·홍보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
8. 사회연대경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9. 해외 사회연대경제 유관기관과의 국제교류 및 협력
10.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

⑤ 경제원은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사업개발, 역량강화 및 지원사업 등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제원을 운영·감독한다.
- ⑧ 경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⑨ 경제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⑩ 경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⑪ 경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연대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⑫ 그 밖에 경제원의 설립·운영, 원장 및 임원의 임명,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이하 “시·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 시·도 지원센터는 민·관 협력의 원칙에 따라 공공이 설치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 민·관 공동운영, 민간위탁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도 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업무범위, 운영방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사회연대금융과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

제24조(사회연대금융의 육성 및 제도 정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의 원리에 부합하는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에 대한 공공
· 민간 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2.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 및 공시
제도의 도입
3. 「신용협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상호금융기관 및 비영
리 민간재단의 사회연대경제조직 투자 및 여신 확대를 위한 금융
상품 개발 및 제도 정비
4. 사회연대경제 관련 공제기금 및 민·관 협력 도매기금 출연을 위
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지원 활성화
5. 클라우드펀딩, 사회성과연동채권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적합한
새로운 금융수단의 개발

6.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사업과 연계된 금융제도의 정비 제25조(사회연대금융기관의 지정 및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금융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연대금융기관의 기금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회연대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융자 또는 지원사업
2.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한 투자·융자 사업
3.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4.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경영상 위기 시 긴급구제 금융사업
5. 사회연대경제조직 투자·융자에 따른 손실 보상
6.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금의 운용 및 위탁사업
7. 사회연대경제 공제기금의 위탁·운영
8. 사회연대경제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기금 조성

④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사회연대금융기관은 사회연대금융 목적의 출자·융자·투자·기부 등을 위한 모금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회연대금융기관의 설립, 지정, 지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국가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연대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국가는 사회연대금융 정책에 따라 지정된 사회연대금융기관을 기금의 운영기관(이하 “기금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 기금을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존 정책기금에서 전입되는 재원
4. 주요 정책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 또는 투자금
5. 기금 운용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④ 기금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연대경제 발전과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운영
2.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을 위한 투자, 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사업
3.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의 발굴·육성 지원사업
4.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

며, 출연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기금운영기관의 지정 절차, 기금 관리·운영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

제27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사회연대경제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대상·기준·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사회적 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①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이하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경우 조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내외 통용되는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의 개발,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적정한 대가로 임대·양여할 수 있다.

제30조(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 ① 국가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세제 운영을 합리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

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반기업이나 법인·단체 등이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제31조(교육·훈련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은 학교, 평생교육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역량강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학생, 청년 및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민간의 참여와 자원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하여 교류·협력체계 구축, 기금조성 지원, 기업의 사회공헌 연계, 자원봉사 활성화 등 필요한 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3조(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간 협력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사업연합 또는 조직연합, 각종 제휴활동 및 연대조직 구축 등
 2. 사회연대경제조직간의 교류협력 및 각종 공동사업의 촉진
 3. 사회적 성과 창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과 공동브랜드 개발
 4. 사회연대경제 공유자산의 조성 및 공동 활용
 5.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규모화를 위한 사업거점 조성 및 판로유통망 구축 등
-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지역·업종·분야·전국 단위에서 연대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발적인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청년층의 창업활동 촉진과 참여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의 사회연대경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기업가 발굴, 창업보육센터 설치 등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의 창업과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컨설팅, 공간·시설 지원, 활동비 보조,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 등 관계 기금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이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사업적 제안과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청년층의 창업활동 촉진과 참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운영

제35조(운영의 공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회계장부
4. 그 밖에 정관이나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연대경제조직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사업결산 보고서

- ② 정부는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회연대경제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공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상 비밀 등 공개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국제연대협력 및 공적개발원조

- 제37조(국제협력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및 해외진출 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고, 필요한 비용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국제연대협력의 촉진)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위기 대응, 인권 및 평화 증진 등 국제사회의 공동가치 실현을 위한 연대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공적개발원조와의 연계) ① 국가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협력 수행기관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협력사업 및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40조(국제개발협력사업 등의 추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사회연대경제조직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글로벌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수원국 또는 지역 공동체의 경제·사회적 역량 강화, 자립 기반 마련 및 인권 보장 등에 기여하도록 기획·수행하여야 한다.

제41조(국제연대협력 전담기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정책개발, 정보 교류 및 국제 네트워크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는 사회연대경제조직, 공공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와 정책조정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8장 보 칙

제42조(국회보고 등)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수립한 부문별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매년 수립한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시·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① 제22조제11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연대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